|  |  |  |
| --- | --- | --- |
| **재정부**  **《소형기업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면제**  **관한 회계처리규정》에**  **관한 통지**  재회[2013]24호  국무원 유관 부와위원회, 유관직속기구,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소기업회계준칙》을 철저하게 관철시키고, 집행 중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소형기업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잠정면제에 관한 통지》(재세[2013]52호)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당국은《소형기업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면제에 관한 회계처리규정》을 제정한 바, 본 지역 관련 기업에 집행하고, 집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당국에 즉시 보고하기 바란다.  　　 재정부  　　 2013년 12월 24일  첨부：  **소형기업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면제에**  **관한 회계처리규정**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소형기업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잠정면제에 관한 통지》(재세[2013]52호), 이하‘《통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형기업 증치세, 영업세징수 면제의 유관 회계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형기업은 판매수익 취득 시, 세법규정에 따라 미지급증치세로 계산해야 하며, 미지급 세금항목으로 확인하고, 《통지》에서 규정한 증치세징수 면제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유관 미지급증치세를 당기영업외수익으로 전입한다.  소형기업이《통지》에서 규정한 영업세징수 면제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면제하는 영업세는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소형기업은 본 규정 실시 전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면제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소급 조정하지 않는다. |  | **财政部**  **印发《关于小微企业免征增值税和营业税的**  **会计处理规定》的通知**  财会[2013]24号  国务院有关部委、有关直属机构，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了深入贯彻实施《小企业会计准则》，解决执行中出现的问题，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暂免征收部分小微企业增值税和营业税的通知》（财税[2013]52号）相关规定，我部制定了《关于小微企业免征增值税和营业税的会计处理规定》，现予印发，请布置本地区相关企业执行。执行中有何问题，请及时反馈我部。  　　 财政部  　　 2013年12月24日  附件：  **关于小微企业免征增值税和营业税的**  **会计处理规定**  　　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暂免征收部分小微企业增值税和营业税的通知》（财税[2013]52号，以下简称《通知 》）相关规定，现就小微企业免征增值税、营业税的有关会计处理规定如下：  　　小微企业在取得销售收入时，应当按照税法的规定计算应交增值税，并确认为应交税费，在达到《通知》规定的免征增值税条件时，将有关应交增值税转入当期营业外收入。  　　小微企业满足《通知》规定的免征营业税条件的，所免征的营业税不作相关会计处理。  　　小微企业对本规定施行前免征增值税和营业税的会计处理，不进行追溯调整。 |